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

발 의 자 : 곽상언 · 이개호 · 김교홍
김동아 · 조승래 · 박수현
복기왕 · 장종태 · 박지원
김태선 · 정태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법원은 대법원예규 “가사재판·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(재특 2012-2) [재판예규 제1400호]”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,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강력히 권고하는 방식으로 “자녀양육안내”를 실시해 왔음. 이는 이혼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·발달을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지난 10여 년 이상 법원 실무에서 정착되어 왔음.

그런데, 현행 민법상에는 “부모교육”에 관한 명시적 법률근거가 부재하고, 「민법」 제836조의2제1항의 ‘안내’ 문구에 자녀양육안내를 사실상 편입하여 운영해 온 것이 현재의 구조임. 대법원예규는 내부사무 처리 준칙으로서 국민의 권리·의무를 직접 제한·부과하는 법규명령

이 아니므로, 교육 불이수에 따른 절차 지연 등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.

이에 「민법」에 “부모교육”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여,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여,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(안 제836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6조의2제1항 중 “안내를”을 “안내 및 부모교육을”로 한다.

제843조 중 “자녀의”를 “안내 및 부모교육에 관하여는 제836조의2제1항을 준용하고,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36조의2(이혼의 절차) ① 협의 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 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<u>안</u> <u>내</u> 를 받아야 하고,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 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 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.	제836조의2(이혼의 절차) ① --- ----- ----- <u>안</u> <u>내 및 부모교육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43조(준용규정)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, 재판상 이 혼에 따른 <u>자녀의</u> 양육책임 등 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 며,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 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,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 839조의2를 준용하며,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 다.	제843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 <u>안내 및 부모교육에 관하</u> <u>여는 제836조의2제1항을 준용</u> <u>하고,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</u> <u>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